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 관련 업무처리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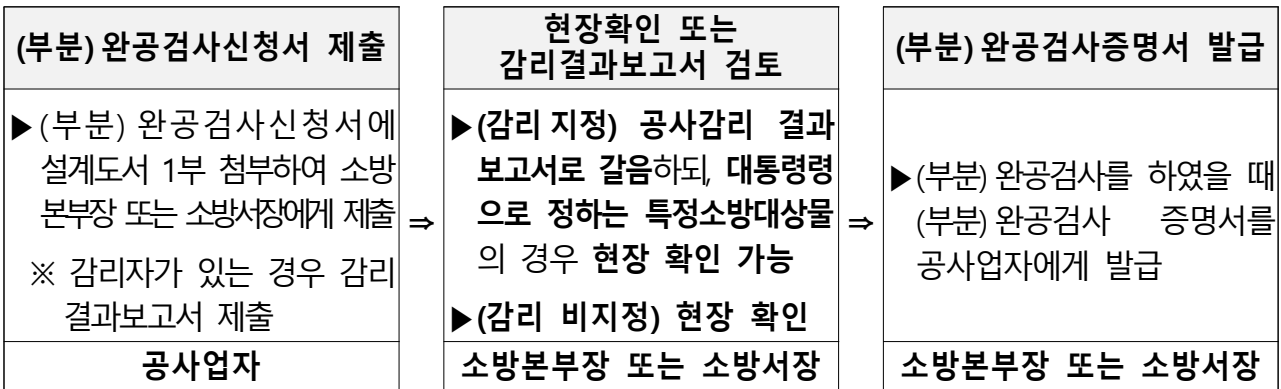
## -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 시, 현장확인 기준 -

### □ 추진배경

- (현 실태) 소방시설공사 감리자가 있는 경우 대부분 공사감리 결과 보고서로 완공검사를 갈음하고 소방관서 현장확인 생략
- (문 제 점) 다수사상자가 발생한 부산 리조트 화재 후, 소방시설 부실 공사 및 감리 관련 소방관서 현장확인 개선 필요성 제기

### □ 완공검사 절차 및 규정

#### [ 완공검사 절차 ]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현장확인 결과 또는 감리 결과보고서 검토 결과 법령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 시, (부분) 완공검사증명서 발급

#### [ 완공검사 관련 규정 ]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완공검사)
  - 공사감리자가 있는 경우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로 완공검사를 갈음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대로 완공되었는지 현장 확인할 수 있음
  - 소방대상물 일부분의 소방시설공사를 마친 경우로서 전체 시설이 준공되기 전에 부분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일부분에 대하여

완공검사(이하 “부분완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음. 이 경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그 일부분의 공사가 완공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함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 현장확인(가능) 대상 특정소방대상물 >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창고 시설, 지하상가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 스프링클러설비등(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 제외), 물분무등소화설비(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마목, 호스릴 방식 제외)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 가연성가스를 제조·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가스탱크의 저장용량 합계가 1천톤 이상인 시설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소방시설의 완공검사 신청 등)

-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또는 부분완공검사를 받으려면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신청서 또는 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신청서에 설계도서 1부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
- 소방시설 완공검사신청 또는 부분완공검사신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현장 확인 결과 또는 감리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해당 소방시설공사가 법령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또는 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증명서를 공사업자에게 발급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30조(소방시설의 완공검사)

- 동일 부지 안에 여러 동의 건축물로 구성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검사는 전체 건축물의 소방시설 설치공사(1건으로 착공신고 된 각 건축물의 소방시설 설치공사)가 완료된 때에 실시. 다만, 건축물부분별로 연동되는 소방시설이 없거나 임시 또는 부분사용을 받고자 하는 부분의 소방시설등이 소방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건축물 부분에 대한 완공검사필증을 발급하여 임시 또는 부분사용승인을 할 수 있음

## □ 업무처리 기준

### [ 부적정 이력 소방공사·감리업체의 현장 ]

- (현장확인 대상) 최근 3년 내 영업정지(취소) 또는 과징금 처분 이력이 있는 소방공사업체의 현장 및 소방감리업체의 현장
  -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 신청서 또는 부분완공검사 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영업정지(취소포함) 또는 과징금 이력\*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현장확인 실시(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가능)
  - \* 소방시설공사업법(소방시설 공사 또는 감리) 관련 처분 이력에 한함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현장확인 방법) 2인 이상 합동으로 철저히 확인(검사팀 합동 등)
  - 완공·부분완공검사 증명서 발급 요청 대상물의 특성, 관서 업무 여건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 전체 검사 또는 중요소방시설 위주 선별 검사
  - ※ 완공검사 증명서 발급 기한이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3일 이내인 점, 소방관서 담당자가 모든 소방시설을 확인하기 곤란한 점, 감리제도의 취지 등 고려

#### < 영업정지(취소)·과징금 현황 관리·공유 방법 >

- ▶ (현재)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 → 소방시설협회 공문 통보 → 소방관서 담당자 확인
- ※ 등록취소·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를 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경우 처분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협회에 통보
- ▶ (향후) 소방관서 담당자 직접 입력 : 소방시설업 등록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입력·확인
- ※ 소방시설업 등록시스템 보완 후 별도 통보 예정(25.5~6월 경)

#### <적용 예시(기간 계산)>

- ❖ ( `25.4.1. 완공검사 신청서 접수 ) `22.4.1. ~ 25.3.30. 기간 내, 접수된 업체의 위반이력 검색 후 영업정지(취소 포함) 또는 과징금 이력이 있는 경우 현장확인

### [ 기타 소방공사·감리업체의 현장 ]

-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 법령 내에서 소방관서 자율적 실시
- ※ 다만, 재난 예방·피해 저감 등을 위해 소방청에서 요청할 경우 추가 실시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완공검사) ①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를 완공하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완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로 완공검사를 갈음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소방시설공사가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대로 완공되었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공사업자가 소방대상물 일부분의 소방시설공사를 마친 경우로서 전체 시설이 준공되기 전에 부분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일부분에 대하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완공검사(이하 "부분완공검사"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그 일부분의 공사가 완공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완공검사나 제2항에 따른 부분완공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완공검사증명서나 부분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완공검사 및 부분완공검사의 신청과 검사증명서의 발급, 그 밖에 완공검사 및 부분완공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호의 대상물을 말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노유자(老幼者)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지하상가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 가. 스프링클러설비등
  - 나.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한다)
3.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4. 가연성가스를 제조·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가스탱크의 저장용량 합계가 1천톤 이상인 시설

##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소방시설의 완공검사 신청 등) ①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또는 부분완공검사를 받으려면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17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신청서** 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신청서에 **설계도서 1부를 첨부** 하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후 설계도서가 변경되지 않거나, 법 제20조에 따라 감리업자가 공사감리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 완공검사신청 또는 부분완공검사신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현장 확인 결과 또는 감리 결과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해당 소방시설공사가 **법령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19호서식의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증명서**를 공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30조(소방시설의 완공검사) ① 동일 부지 안에 여러 동의 건축물로 구성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검사는 전체 건축물의 소방시설 설치공사(1건으로 착공신고 된 각 건축물의 소방시설 설치공사)가 완료된 때에 실시한다. 다만, 건축물부분별로 연동되는 소방시설이 없거나 임시 또는 부분사용을 받고자 하는 부분의 소방시설등이 소방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건축물 부분에 대한 완공검사필증을 발급하여 임시 또는 부분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서 특정소방대상물 전체 또는 부분 완공검사필증을 발급한 경우에 소방서장은 즉시 한국소방안전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가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대로 완공되었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시설
2.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④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에 따라 착공신고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사항이 「건축법」 제1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해당되어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일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소방공사 완공검사(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서 제출을 포함한다) 신청 시에 변경된 서류(소방시설 설계도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공사 완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변경된 사항을 확인 후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